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21. 김문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 의원)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

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정신병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현행 제4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2021.7.22. 2021헌마886)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동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음.

□ 이와 관련한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 개정 이전 「의료법」(법률 제9135호, 2008.10.14.시행)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었으나, 2009년 개정법(법률 제9386호, 2010.1.31.시행)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런데 2009년 개정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3.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은 요양병

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되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2009년 개정법의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協診)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2020년 개정법의 입법목적도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진료과목 운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